

보 도	부 오	별 요
방 법	자료제공	특집, 기관(협정)
파 척	수	국 정

불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030-80

기안용지

(전화: 731-6324)

시 봉 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1.

수신처
보존기간
3

시행일자
97. 6.

보
부 시 장: 전경
조
기
판: 산업경제국장
기
판: 농축축장

기안책임자
관 역 소

시
장

법무담당관 실사필
문서 등록증명

경
인
증명
증명부

발
송
인

경
유
수
신
참
조
작
안
참
조
발
신
명
의
시
장

제
목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고시

제 1 안

수신
네부결재

제목
동전

1. 관련사항

○ 관리공사 수산 836-794호('87. 5. 18)

○ 수협중앙회 유통 05000-502호('87. 5. 27)

○ 중구 산업 27030-13817호('87. 5. 22)

○ 동대문구 산업 27030-1091호('87. 5. 21)

○ 영동포구 산업 27030-5136호('87. 5. 12)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 정착과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

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의거 가락시장 이전
지역(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및 종립동 합동시장 주변, 수협청량리공판장 주변)에
대하여 기히 서울시 고시 제409호('86. 6. 19)로 거래제한 고시한바 있으나,
관리공사사장 및 수협중앙회 회장의 고시기간 연장 고시건의 및 관할구청장의 의견
을 들어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하며

3. 중구청장이 고시제의 의견제시와 남대문시장 및 종립동 합동시장 주변

에 대하여 남대문시장은 아직도 유사도매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립동
합동시장 주변만 고시대상에서 제외하고

4. 고시내용에 대한 산문공고(보도)는 해당지역이 기히 고시지역임이 통
보되어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신문공고를 생략하고 주요 해당부서 및 대상자
역에 게시공고하고, 시행요령을 계정 시달코자 합니다.

가. 거래제한 고시대상 지역 및 품목

지 역	품 목	비 고
· 중부시장(중구 율지로5가동,	김, 진명태, 건오징어, 실치, 건멸치, 건다시마, 미역 건굴비, 건새우, 쥐치포, 명태포, 뱡어포, 명태채,	· 기간연장
오장동 일대)	노가리채, 오징어발, 건문어(16종)	
· 수협청량리공판장	서대, 대구, 노가리, 둠, 뱡어, 고동어, 갈치, 조기,	· 기간연장

주변(동대문구)	명태, 민어, 강달이, 도루묵, 농어, 농성어, 눈불대	
용두동)	장어, 양미리, 승어, 아과, 납치, 가자미, 삼치, 풍치,	
. 남대문시장(중구)	복어, 전어, 전갱이, 춘치, 가오리, 방어, 상어,	
남광동)	학용치, 임연수어, 벤댕이, 정어리, 쥐치, 우럭, 꽃게	
	오징어, 왕개, 굴, 흉합, 바지락, 꼬막, 새조개, 등죽,	
	백합, 피조개, 멸치젓, 청어, 새우젓(50종)	

나. 고시기간 : '87. 6. 20 - '88. 6. 19(1년간)

첨부 1. 고시문(안) 1부.

2. 시행요령(안) 1부.

제 2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전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정착과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수
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을 고시하였으니,

2. 고시지역 관할구청장은 합동단속반을 운영, 유사도매 행위 단속에 칠
적을 기하고, 각지정도의의사와 공판장에서는 반입 물량을 전방상장 거래하여 거래와

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3. 각구청장은 관내에 농수산물이 산지로부터 직반입되어 거래되는지 여부를 수시확인 단속하고, 특히 중구, 동대문, 영동포구청장은 중림동 합동시장주변, 경동, 동서, 영일시장에 대하여 유사도매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기 바람.

가. 거래제한 고시지역 및 품목 : 별첨 고시문 참조

나. 고시기간 : '87. 6. 20 ~ '88. 6. 19(1년간)

첨부 1. 고시문 1부.

2. 시행요령 1부.

수신처 : 서구1-17,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수협중앙회회장, 노량진

수산(주), 가락시장지정도매회사1-8.

제 3 안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참조 시장과장

제목 동전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정착과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

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을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가. 거래제한 고시지역 및 품목 : 별첨 고시문

나. 고시기간 : '87. 6. 20 - '88. 6. 19(1년간)

첨부 1. 고시문 1부.

2. 시행요령 1부. 끝.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고시 판단

(건어 및 선어)

1. 지역 판단

구분 지역	의 견 (건의)		종합 판단 (서울시)	비 고
	관할 구청	관리공사(지정 도매의사)		
· 중부시장 (중구율지로5 가동, 오창동 일대)	· 고시필요	· 고시필요	· 기고시지역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동 사장에 아직 유사도매 행위가 상존 하고 있으므로 고시필요	· 기간연장
· 수협청량리 공판장주변 (동대문구 용두동)	· 고시필요	· 고시필요	· 기고시지역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주변에 아직 유사도매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고시필요	· 기간연장
· 남대문시장 및 합동시장 주변(중구남창 동, 중림동)	· 고시불요 * 거래품목이 거의 제도시 장에서 반입 되고, 소매위 주 거래	· 의견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고시지역으로 남대문시장은 고정적인 유사도매 행위자가 자취를 감추었다 하겠 으나, 아직도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므로 고시필요 · 중림동 합동시장 주변은 유사도매 행위가 근 절된 상태로 취급 품목이 저장, 보관이 곤 란한 선어류로서, 거의 제도시장에서 반입, 소매위 주의 소량거래에 노점상으로 고시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연장 · 기간연장

2. 품 목 판 단

구분 지역	품 목		종 합 판 단 (서울시)	비 고
	기 고 시	추가고시 건의 (지정도매의사)		
중부시장 (건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고시(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김, 조미오징어 · 김, 건명태, 건오징어, 실치, 건멸치, 건다시마, 미역, 굴비 ○ 2차고시(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새우, 쥐치포, 명태포, 뱡어포, 명태채, 노가리채, 오징어발, 건문어, 오징어채, 건개탕조개, 건암, 건폐주, 건바지락 ○ 총2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김, 조미오징어 · 김, 건명태, 건오징어, 실치, 건멸치, 건다시마, 미역, 굴비 · 포, 노가리포, 한치 · 건새우, 쥐치포, 명태포, 뱡어포, 명태채, 노가리 · 물매기(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6.19 추가고시 품목 중 낸간 거태량이 전혀 없거나 극히 소량으로 유통질서문란 소지없는 품목 제외(5종) (낸거태 상장 실적 5톤 미만) · 금번 추가고시 건의한 품목 중, 제조 가공식품 허가를 받아 부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순수 건어물이 아니므로 추가고시 불가하며 · 거래 실적이 균소하고 거래 제한 지역 시장의 일부 점포에서 소량 취급하므로 규제 품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징어채, 건개탕조개, 건암, 건폐주, 건바지락 · 맛김 등 4종 · 쥐알포 등 12종
수협청량리 공판장 주변 (선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 대구동 50종 	·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고시한대로 품목 고시 필요 	

'86 가락시장 건어물 품목별 거래실적

[총거래량 : 45,774t(가락시장 전체거래량의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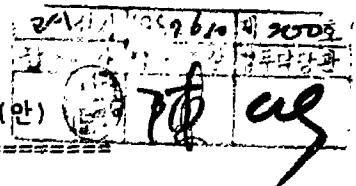
[총거래금액 : 1,274억원(가락시장 전체거래금액의 31%)

○ 주요품목 거래 실적

구분 품목별	거래량		거래금액		비고
멸치	13,732t	30%	319억원	25%	
건명태	11,443"	25"	141 "	11"	
미역	10,090"	22"	76 "	6"	
김	5,453"	12"	509 "	40"	
오징어	3,204"	7"	204 "	16"	
기타	1,832"	4"	25 "	2"	

(분석)

- 멸치등 5개 품목이 총거래량의 96%이며 거래금액은 98%임
- 기타 거래물량 4%는 50여개 품목으로 그중 이번 거래제한 거래품목에서 제외한 품목의 거래량은
 - 오징어체 : 거래량 전무
 - 건개량조개, 건홍합, 건매주, 건바지락 : 년간 20.4t
(월 거래량 : 1.7t, 1일 거래량 : 50kg)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의거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6.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시지역 및 품목

지 역	품 목
• 중부시장(중구 을지로 5가동, 오장동일대)	김, 전명째, 건오징어, 실치, 건멸치, 건다시마, 미역, 건굴비, 건새우, 쥐치포, 명태포, 냉어포, 명태채, 노가리채, 오징어발, 건문어(16종)
• 수협청량리 공판장 주변(동대문구용두동)	서대, 대구, 노가리, 듬, 냉어, 갈치, 조기, 명태, 민어, 강달이, 도투득, 농어, 농성어, 눈불대, 장어, 양미리, 숭어, 아귀, 가지미, 넙치, 삼치, 꽁치, 복어, 전어, 전갱이, 준치, 가오리, 방어, 상어, 학꽁치, 임연수어, 뱀덩이, 정어리, 쥐치, 우럭, 꽃게, 오징어, 왕개, 굴, 통합, 반지탁, 꼬막, 새조개, 등죽, 베합, 피조개, 멸치젓, 청어, 새우젓(50종)
• 남대문시장(중구 남창동)	

2. 고시기간 : '87. 6. 20 - '88. 6. 19(1년간)

3. 계한방법

고시지역내에서 고시된 품목거래는 법정도매시장 또는 농·수협공판장의 상장
거래품목으로 계한함(산지로부터 직접반입 거래할수 없음)

4. 벌칙

본 고시사항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 받게됨.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고시에 따른 시행요령

1. 목 적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2. 근 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제2항

3. 고시내용

○ 지역 및 품목

지 역	품 목
· 중부시장(중구 울지로5가동, 오장동 일대)	김, 건명배, 건오징어, 실차, 건멸치, 건다시마, 미역, 건 굴비, 건새우, 쥐치포, 명태포, 병어포, 멍때지, 노가리채, 오징어발, 건문어(16종)
· 수협청량리 공판장 주변(동대문구용두동)	서대, 대구, 노가리, 듬, 병어, 고등어, 갈치, 조기, 명배, 민어, 강달이, 도루묵, 농어, 농성어, 눈불대, 장어, 양미리, 승어, 아귀, 가지미, 날치, 삼치, 꽁치, 복어, 전어, 전갱이, 준처, 가오리, 방어, 상어, 학꽁치, 임연수어, 벤댕이, 정어비, 쥐치, 우럭, 꽃게, 오징어, 왕개, 굴, 흉합, 반지락, 꼬막, 새조개, 등죽, 백합,
· 남대문시장(중구 남창동)	피조개, 멸치젓, 청어, 새우젓(50종)

○ 고시기간 : '87. 6. 20 - '88. 6. 19(1년간)

4. 제한방법

고시지역내에서 고시된 품목거래는 법정도매시장 또는 농·수협공판장의 상장거래 품목으로 제한하여 산지로부터 직반입되는 상품은 단속대상임

5. 거래품목 표시

- 법정도매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은 거래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함
 - . 포장상품은 상품별 포장지에 거래확인(스탬프) 표시
 - . 비포장 상품은 거래확인서 발급

6. 행정사항

- 고시지역 관할 구청장은 고시문을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기관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유사도매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 법정도매시장과 농·수협공판장은 거래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에 철저를 기한다.

거래 확인서

No_____

거래품명 :

수량 :

규격 :

판매자 :

도매회사

증매인 번호 및 성명

매입자 : 영업장소

성명 :

거래일시 :

확인자 :

도매회사

(인)

관 면 법 규

=====

○ 법 제36조(거래의 제한)

농림수산부장관은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 구역 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법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시장명칭 사용자
2. 무허가 도매시장 영위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매수한 자

○ 시행령 제20조의 2(거래의 제한 품목등)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구역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의 구역안에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은 과실류, 채소류, 서류, 유지작물류, 조수육류, 생선 어류, 건어류 및 해조류로 한다.

○ 시행령 제34조의 제2항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대하여는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한에 한한다.

6. 법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단속의 관한을 표시하는 충표의 발행
7. 법 제60조네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에 대한 보고영업과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
10.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지정도매인 지정 승인의 취소
1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